

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①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

- 개정 헌법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들을 대거 반영

②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 부재
 -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
- 김정은과 최룡해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
 -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신임장·소환장)를 대표
 - 같은 국가대표권을 갖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위상 차이 반영
 - 1990년대 김정일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
 - 따라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김정은의 對美·對유엔 외교에서의 역할 고려
- o 국무위원장 명령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추세에는 부합하나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

③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 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호칭인 ‘최고사령관’ 보다는 평시호칭의 의미가 담긴 ‘총사령관’을 명시
-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간소화하고 고유 명사화
-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102조)

④ ‘계승성(과거)’ 보다는 ‘발전성(미래)’ 강조

- o (리더십)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
-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
- 이들을 과거 인물로 전환하는 대신,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 부활

- (사상)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
 - 현재 남북·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 강조
 -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적으로는 무의미
- (군사) 선군시대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 (경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33조) 삭제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
 - 실리보장 추가(32조), 내각의 역할 강조(33조)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 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달리, 농업부문에서 포전관리담당제와 같은 사업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포전관리담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 시사

⑤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 반영

-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

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 폐지

-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 핵심원으로 배려 차원에서 만든 제도('98.9 헌법개정)

o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략

⑦ 기존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o △강성국가→사회주의강국(서문) △주체사상, 선군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서문) △ 전문학교학생→대학생(47조) △외교위원회 추가(98조)

o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급적 위상을 반영

- ‘근로인테리’의 ‘지식인’ 변경(4조)과 정보화(26조) 및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27조) 추가

-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46조)

북한의 개정 헌법의 내용 비교(2016-2019)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2016년 헌법 172항 → 2019년 헌법 171항)

구분 해당조문	2016년 사회주의헌법	2019년 사회주의헌법	비고
서문 (1문)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이다	<예시 1문>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수령’ 및 ‘령도자’의 존칭 인용(2016년 개정시 삭제/19년 추가) 이는 이하 헌법 전문에 동일 적용
서문 8문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u>강성국가건설의</u>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u>사회주의강국건설의</u>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	강성국가건설→사회주의강국건설로 변경
서문 10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추가
서문 11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u>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u>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을→‘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

		인이다.	대의 은인'으로 변경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을 삭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 '자기활동'을 →'국가건설과 활동'으로 변경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 문구 추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경제건설을 다그친다.'으로 수정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u>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u>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u>대안의 사업체계의</u>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실시 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를 추가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으로 수정
제36조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 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 시킨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 부분 추가 '대외무역'을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으로 수정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u>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다그친다.	'온 사회 인테리화'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수정
제4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u>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u> 시킨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복고주의적경향'을 →'주체성의 원칙,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으로 수정

		계승발전시킨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u>견결한 혁명가</u> 로, <u>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u> 으로 키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u>집단, 조국</u> 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u>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u> 으로 키운다.	‘집단, 조국’을 추가 ‘견결한 혁명가’를→ ‘참다운 애국자’로, ‘주체형의 새 인간’을 → ‘사회주의건설의 역군’로 수정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u>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u>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u>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u>	과학기술인재(용어 정리)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u>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u>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부분 추가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체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체도를 강화하고 <u>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u>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부분 추가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u>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호하고</u>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u>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u>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선군혁명로선’ 삭제 ‘혁명의 수뇌부’를→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로 수정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u>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u> 을 관철한다.	국가는 <u>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u> 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u>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u> 을 관철한다.	‘군대와 인민’을→‘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로 변경
제91조 8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u>명예부위원장</u> ,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명예부위원장’ 삭제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u>국가를 대표하는</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국가를 대표’ 문항 추가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u> 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무력총사령관</u> 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제109조 1항	<u>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u>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국방건설사업’ 삭제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 삭제	

북한의 개정 헌법의 내용 비교(2013-2016)

구분 해당조문	2013년 사회주의헌법	2016년 사회주의헌법	비고
서문 (1문, 3문, 6문, 10문, 13문, 17문, 18문)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예시 1문>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수령’ 및 ‘령도자’의 직함이 삭제되었음 이는 1문, 3문, 6문, 10문, 13문, 17문, 18문에도 적용
서문 17문 (뒤에서 두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표현한 것을 공통적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통일
제6장 국기기관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 위원장 -> 중앙재판소 -> 중앙검찰소	공통적으로 제6장 국가기관에서 기관의 명칭 중 일부가 통일적으로 변경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u>중요간부</u> 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u>중요간부</u> 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u>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u>	제103조 제1항 2호 ‘국방위원회사업’이 ‘국무위원회사업’으로, 3호 ‘국방부문의 중요간부’가 ‘국가의 중요간부’로 변경 7호가 새로 신설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u>최고국방지도기관</u> 이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u>최고정책적지도기관</u> 이다.	‘최고국방지도기관’이 ‘최고정책적지도기관’으로 변경
제109조	<p>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p><u>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u></p> <p><u>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u></p> <p>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p> <p>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p> <p>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p>	<p>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p><u>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u></p> <p>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p> <p>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중 기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제1호로 통합되어 변경됨</p> <p>기존 5호와 6호의 내용이 삭제됨</p>
제123조	내각은 <u>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u> 이며 <u>전반적국가관리기관</u> 이다.	내각은 <u>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u> 이며 <u>전반적국가관리기관</u> 이다.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을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 변경